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2026호
2025년 1월 3일
금요일

공 고

- 공 고 제 9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
- 공 고 제 2 0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9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
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10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 부과)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(과태료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과태료 부과고지서)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(등기)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1월 3일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명: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
 2. 대 상 자: 인천남동하1880 외 6건 (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)
- ※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.
3. 공고기간: 2025.01.03. ~ 2025.01.22. 까지
 4. 공고내용
 - 가. 납부장소: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
 - 나. 부과근거
 -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[별표 2]
 -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 - 다. 이의신청: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)
 - 라.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(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)
 - 가산금이 최고 75% 부과(익월까지 가산금3%, 그 후 증가산금 매월1.2%)됨
 - 체납처분: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
 5. 문 의 처: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(☎ 032-453-2824)

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

연번	차량번호	납부자명	주소	내용	반송일	과태료
1	인천남동하1880	황**	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***, ***동 ****호	등화장치 임의설치	2024.11.07.	30,000
2	인천부평자4077	김**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***번길 **, ***호	번호판 오염	2024.11.08.	500,000
3	인천84배1153	김**	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**번길 **, ***호	번호판 부착 불량	2024.11.08.	500,000
4	인천미추홀하8081	박**	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***번길 **, ***동 ****호	번호판 훼손	2024.11.08.	500,000
5	29구5518	김**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***, ***호	번호판 가림	2024.11.08.	500,000
6	인천남동파8241	정**,나**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**-, ***호	등화장치 임의설치	2024.11.08.	30,000
7	227누8222	김**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***, ***호	등화장치 임의설치	2024.12.06.	30,000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0호

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, 제84조(과태료)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3일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대 상 : 경기부천사0335 (첨부파일 참조)
2. 공 고 기 간 : 2025. 1. 3. ~ 2025. 1. 22.
3. 공시송달 내용
 - 가.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
 - 나.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%까지 부과되며
 - 다.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4.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(☎032-453-282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 끝.

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

순번	차량번호	성명	반송일자	위반항목	우편번호	주소
1	경기부천사0335	CHU **** *	2024.12.09.	자동차관리법 제29조	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***번길 *, ***호(구월동)